



회계예규·고시·통첩 전문

지난 7월10일 재정경제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중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행정쇄신위원회는 하도급보호자를 위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확정 의결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건설업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건설업법에 개정되어 민간공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의무화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공사와는 달리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공사업체의 최대 숙원이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가 행정쇄신위원회의결을 통해 시행이 확정되기까지는 우리 대한설비공사협회(회장 이동락)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대한설비공사협회는 그동안 이동락 회장을 중심으로 「건설하도급부조리의 공질적 병폐 척결차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실시 및 신공법·신자재 설계반영」을 주창하고 그 개선 방안을 지난 5월26일에 개최된 오명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미보증에 따

라 원도급자의 부도시 하도급자의 전문건설업체 연쇄 도산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하도급대금 지불보증을 상호 20% 범위내에서 발생한 실손액으로 보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등 건설교통부장관 주제 간담회, 건설관련단체장 간담회, 건설관련실무회의 등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했었다.

한편 이동락 회장은 선진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공법·신자재」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방지,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나 국내에서의 사용 실적이 미미하여 발주관사에서 채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포함한 시공상의 하자는 건설업체의 책임이므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이 되는 신자재 및 신공법을 발주자가 적극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대한설비공사협회는 부실시공방지와 공사원가절감 및 시공상의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큰 선진외국의 신자재 또는 신공법을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설계도상 명시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되는 품질시험검사서가 첨부되었거나 공사실적이 있는 것은 정부발주관사에서 적극 채택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건의 했었다.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중 공동도급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예규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 의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제한의 경우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이 없는 구성원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시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외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방법을 제한하는 내용

2. 일부구성원 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 자격을 각각 구비토록 하는 내용

3. 공동수급체구성원수를 지정하는 내용 및 기타 공동수급체의 자유로운 구성을 제한하는 내용등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

등록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은 건설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업체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실적 및 기술보유상황과 면허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 다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의 부도, 파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도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등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6-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한다.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

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금융기관) 공동수급체의 거래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하고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가되었을 때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인)

○○○(인)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금융기관) 공동수급체의 거래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하고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발주자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으로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199 년 월 일
○○○(인)
○○○(인)

일괄 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2,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보증서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입찰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년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를 말한다.

제3조(일괄입찰보증서의 납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보증서의 납부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매 회계년도초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등록마감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신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서를 납부한 자중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입찰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다만, 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서의 기재사항) 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보증기간) 보증서의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익년도 1월30일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납부등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를 납부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는 그 보증서의 납부 및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국고귀속)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 그 금액은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83조에서 규정한 입찰 보증금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9조(입찰참가상황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월별로 입찰참가자, 공사명, 입찰금액, 입찰일자 등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2-1,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한다.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 '95. 7. 10)

제1조(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

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 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 가. 계약금액이 1백억원이상인 경우 : 1백분의 20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백억원 미만인 경우 : 1백분의 25
-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백분의 30

2. 물품의 제조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백분의 20
-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백분의 25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백분의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총액」기준 임금정책과 관련하여 중점관리업체로 통보된 자일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채권확보) ①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화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 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예치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여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제6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기

관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의 청구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14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하도급에 관한지침

(회계예규 2200.04-135, '95. 7. 10)

1. 국가를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라 함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시공, 제조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그 제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노무의 제공만을 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관서의 승인을 말하며 정부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라 함은 하도급 조건변경에 관하여 계약체결한 발주관서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변경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각 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승인요청

이 있을 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고자 이의 승인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가. 계약건명
- 나. 계약금액
- 다. 하도급부분 및 내역
- 라. 하도급금액
- 마. 하수급인
- 바. 계약이행기간
- 사.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 아. 계약서 사본
- 자. 기타 참고사항

4.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가. 하수급인의 당해 공사, 제조 또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등을 보유한 자만이 시공, 제조 또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5-3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9호의 하도급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지명업체 선정기준관한사항

(회계예규 2200.04-115, '95. 7.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도급한도액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공사의 시공실적의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중에서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4. 1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15-2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지명업체선정기준에관한사항”은 폐지한다.

계약서류구비 요령

(회계예규 2200.04-134, '95. 7. 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2.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3.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할 경우

제2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조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비서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회계명 및 예산지번호
3. 계약금액(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의 경우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 적용내역명시)
4. 적용조문
5.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6. 제한기준 및 제한업체 선정사유(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 선정기준 및 동업체 선정사유(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선정사유(수의계약)
7. 시공기간
8. 공사현장
9. 공사집행현황
 - 가. 총공사규모
 -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 다. 책정된 예산액
 - 라. 예산배정액
 -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 사. 집행잔액
10. 관급자재 내역
11. 설계자
12. 설계심사자
13. 감독공무원
14. 검사공무원
15. 기성부분 대가 지급회수 및 지급총액
16. 하자보수보증금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7. 첨부서류
 - 가. 제한업체 명단 및 입찰참가업체 명단(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명단(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주소, 성명(수의계약)

나.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다. 계약특수조건

라.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사본(지명경쟁계약)

마. 입태조사서

바. 세출예산배정서 사본

사.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일위대가포함)

아. 공사공정예정표

자.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차. 견적서(수의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물품구매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3. 계약금액

4. 적용조문

5.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6. 제한기준 및 제한업체선정사유(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선정기준 및 동업체선정사유(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상대자 선정사유(수의계약)

7.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

8. 납품기한

9. 납품장소

10. 계약집행현황

가. 총계약규모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다. 산정된 예산액

라. 예산배정액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바. 집행잔액

사. 금후집행계획

11. 물품재고현황(저장품에 한함)

가. 적정표준재고량

나. 현재고량

다. 금회구입량

라. 전차구입량 및 구입년월일

12. 관급자재내역

13. 검사공무원

14.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 대가 지급회수 및 지급총액

15. 첨부서류

가. 제한업체명단 및 입찰참가업체명단(제한경쟁계약), 지명업체명단(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주소, 성명(수의계약)

나.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다. 계약특수조건

라.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 사본(지명경쟁계약)

마. 입태조사서

바. 세출예산배정서 사본

사.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전차구입단가 표시)

아. 제조공정예정표

자. 규정서(도면, 규격설명서)

차. 견적서(타견적포함) (수의계약)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계약을 체결하여 제1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회계명 및 예산지변과목

3. 계약금액

4.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유

5. 계약방법 및 적용조문

6. 계약방법 및 동방법을 채택한 구체적인 사유

7. 계약상대자의 주소, 성명

8. 품명, 규격, 수량 및 단가

9. 납품기한

- 10. 납품장소
- 11. 계약집행현황
 - 가. 총 계약규모
 - 나. 기집행액(전년도까지)
 - 다. 책정된 예산액
 - 라. 예산배정액
 - 마. 금년도중 집행액 및 금회배정액
 - 바. 집행잔액
 - 사. 금후집행잔액
- 12. 첨부서류
 - 가. 계약서 또는 계약서(안)
 - 나. 개산가격명세서
 - 다. 계약특수조건
 - 라. 업체조사서

제4조(기재요령)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적용조문과, 사유에는 관계법령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류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호의 기준 및 사유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제한업체,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7호, 제2항제15호, 제3항제12호 첨부서류중 업체조사서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입시에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중 당해 업체 실태조사서 사본을 작성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이력사항(학력 및 경력)을 작성하여, 각각 취급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17호 첨부서류중 도면에는 하자책임한계의 구분이 곤란한 부분을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제15호중 전차 구입단가는 산출내역 후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10호중 기집행액은 최초계약체결시부터 전년도말까지 집행액으로 하되, 계약회수별, 계약년월일 및 금액별 현황을 별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거서류의 비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적용시 특정인이 되는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특허품 또는 실용신안품 구입시에는 1개월 이내에 발행된 특허원부 또는 실용신안원부의 등본, 국내 단일업체인 경우에는 관계관서에서 입증한 서류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가목” 적용시 당해 K·S표시 물품의 생산자인 1인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K·S표시 허가증사본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적용시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다목” 적용시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 및 제7호 “비목” 적용시

새마을공장 또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다목” 적용시

연고자인지의 사실입증에 필요한 사항

7.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사목” 적용시

당해 국산신규개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 “아목” 적용시

당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전시동원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다목” 적용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용역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10.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7호 “라목” 적용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와 동 법인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인지의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

부칙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4-3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집행시 서류구비요령”은 폐지한다.

계약실적보고요령

(회계예규 2200.07-103, '95. 7. 10)

1.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며 매년도 실적을 당해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규칙 별지 제16서식(이하 제16호 서식이라 한다)에 의거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때에는 수요관서는 전 “가”목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제16호서식)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매년도 실적을 당해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16호 서식에 의거 회계별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당해 소관의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속서류로서 회계별(또는 기금별)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가”목의 계약실적 (총)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거 계약실적 총보고서(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부시설공사의 대행계약 및 정부수요물자(비저장품)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되(소관별 회계별 또는 기금별)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 및 의자의 계약실적 (총)보고서는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

다.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대행계약 또는 물자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 각 호의 계약실적 (총)보고서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전 각항의 계약실적(총)보고서(제16호서식)는 시행령 제49조의 계약서 작성 생략의 경우를 제외한 실적으로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5.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 제25조(지명경쟁계약실적에 포함시킬 것),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도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부칙

- ① 이 예규는 199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7-103-3 “계약실적보고요령”은 폐지한다.

부대입찰집행기준

(재정경제원고시 제95-28호, '95. 7. 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아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부대입찰을 실시한다는 뜻.
- 2.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제1차연도에 이행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게 할 경우에는 그 뜻.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 1. 낙찰자는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부대입찰내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 3. 기타 부대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부대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의 별지

로 다음 각호의 사항 (이하 “하도급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대표자성명 및 도급한도액, 면허·허가등의 종류
-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
- 3.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별 금액
- 4.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제5조(부대입찰 내용의 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대입찰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낙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하도급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당해 하도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

- 3.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의 비율이 건설법령상 의무하도급 금액비율에 미달될 때.
- 4. 기타 입찰조건에 위배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결과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무효사유가 부대입찰의 하도급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계약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사항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 1.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부도, 면허취소 발생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7조(하도급사항의 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협의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고시는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재무부고시 제93-19호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은 폐지한다.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재정경제원고시 제95-29호, '95. 7. 1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조 및 구매계약(이하 “종합낙찰제”라 한다)의 대상범위, 입찰절차, 낙찰자결정방법 등 집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변압기(20KV 이상 전력에 한함)
- 2. 모터
- 3. 펌프
- 4. 보일러(3톤이상의 육용강제 및 주철제에 한함)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제2조 각호에서 정한 품목을 종합낙찰제에 의거 발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

야 한다.

- 1. 당해품목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의거 집행한다는 내용.
- 2. 당해품목의 품질 등의 표시서에 관한 사항.
- 3.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물품을 종합낙찰제로 발주코자 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6조에서 규정한 품질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예정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조에서 정한 품목을 종합낙찰제에 의거 집행코자 할 경우에는 동 제도의 취지, 계약수량, 이행의 전방,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등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등의 표시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1호의 변압기는 15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모터·펌프의 경우는 7년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 3. 제2조제4호의 보일러의 경우는 2년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소모비의 산출방식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심사 및 평가위원회) ① 발주관서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 및 기타 평가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제출한 제6조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 품질 등의 표시

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제7조제1항의 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명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과 제6조제1항 각호의 총 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제6조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의 품질 등의 표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9호의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제10조(납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당해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절차기준) 발주관서의 장은 종합낙찰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무부고시 제93-7호 “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폐지한다.

복수예비가격 작성 낙찰자 결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

(회계 45101-1083, '95. 7. 10)

1. 회계 45101-662 ('94. 5. 23)에 관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공사·용역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작성과 낙찰자 결정기준을 시달하니 귀 부(원) 및 귀부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음 —

추정가격이 1백억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5억원)미만인 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

3. 기초금액의 작성

가. 소속기관장의 보조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용역기관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조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등을 합산하여 기초금액(이하 “기초금액”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노무비·경비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예정가격 조사상에 명시하고 기초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4.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

원이 기초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조정된 금액을 의미함)에 $\pm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가격간의 폭을 가능한 한 확대하여 서로 다른 10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입찰전에 미리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중에서 3인(우편 입찰 등으로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3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3개를 추첨토록 한 후 동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낙찰자가 확정된 후 개찰장소에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된 가격과 그 이외의 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3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및 동 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사하여야 한다.

5. 경과조치

이 통첩은 '95. 7. 6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용역입찰에 적용되고, “복수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선정절차에 관한 회계통첩”(회계 45101-662, '94. 5. 23)은 폐지합니다. 다만, '95. 7. 5이전에 입찰공고되어 '95. 7. 6이후에 실시되는 공사·용역입찰시에는 폐지되는 '94. 5. 23자 통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43, '95. 7. 10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2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의 경우는 3억원)이상인 공사

2.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우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 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 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 (22) 문화재 보수공사
- (23) 차선도색공사
-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 (26) 하수도흡입 준설공사
- (27) 심정공사
- (28) 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 공사

3.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 (1) 스티폼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 (2) 피·시공법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4. 제조

- (1)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5. 공사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등의 경우.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사

추정가격이 2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인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공장(요목재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와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물품구매·용역 기타에 있어서는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제3조(제한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 또는 기술보유상황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있어 “실적”이라 함은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실적(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제조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

③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있어 “기술보유상황”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2.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 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있어 “채무상태”라 함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